

1997. 6.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 충주시시기조례안
- ━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 ━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총 무 원 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시기조례안	'97. 6. 16	'97. 6. 17	'97. 6. 19	'97. 6. 20	공보담당관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97. 5. 28	'97. 5. 30	"	"	지역경제과장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	"	"	"	문화관광담당관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97. 6. 16	'97. 6. 17	"	"	총무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97. 6. 16	'97. 6. 17	"	"	시정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시기조례안

1) 제안이유

- 1995. 1. 1 충주시·증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새로이 시기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은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충주의 미래를 나타냄.

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및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창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회기는 분기 1회
- 위원회 기능
 - 경영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제안
 -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 방안
 -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
 - 자치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안과 자문으로 함.

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종전의 충주시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하여 충주시문화상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상부문 (6개)의 명칭을 일부변경
- 각 부분별 심사위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 심사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 수상후보자 자격을 명문화 하여 문화상의 질을 향상

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청 신청사 준공과 일부면·동사무소의 대지 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변경내역

사무소명	현 행	개 정 안
충주시청	충주시 문화동 1024	충주시 금능동 700
살미면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35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35-2
금가면	충주시 금가면 하답리 297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08-4
성내, 성남, 성서동	충주시 성내동 223-3	충주시 성내동 452

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제1회 합격자에 한하여 본청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고 '97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력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시본청 "565"명을 "569"명으로 4명 증.
- 직속기관 "177"명을 "176"명으로 1명 감.
- 사업소 "147"명을 "145"명으로 2명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시기조례안

- '95. 1. 1일 통합 충주시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시기가 없어 이를 새로 제정하여 충주시의 시기로 삼아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계양하여 충주시를 상징코자 하는 것으로
- 지난 '97. 6. 4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시기 제정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당시 시기, 문장, 휘장의 모형 및 규격 등 시를 상정하는 시기의 의미 등
보양에 구체적인 지적 등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기바탕에 새겨진 "충주시"의 "충"자
글씨의 모양이 언뜻보기에 "충"자로 잘못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음.

○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음

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현행 충주시위원회관련조례와의 유사내용 비교 검토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4조 제1항 제1호 "민자유치사업과관련한주요시책수립에관한사항"과
- 심의대상조례안 제2조 제3호 "민자유치사업유치에따른의견제안및유치방안"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제3조 제1호 "지방재정운영방향에관한사항" 및 제2호 "재원조달에관한사항"과
- 심의대상조례안 제2조 제6호 "지방재정의경영화방안"

○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의 위촉기간등 해촉 및 위원수의 한계가 불명확함.
- 제4조 제1항의 규정중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할 권리이 있으며 또한 당연히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보나
불필요하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 하였음.
- 제9조 "위원회해촉"은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자격제한 규정 신설 및
시상과 동시에 심사위원의 임기가 중요 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수를
증원하여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3조 수상부분중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산업경제근로부문"으로 "근로, 윤리부문"
을 "사회봉사윤리부문"으로 수상포 확대

○ 제6조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충주시청사를 금농동에 신축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 주소를 현재 "문화동 1024"에서 "금농동 700"으로 변경하고 6월 중 이전 완료로 시행령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살미면, 금가면, 성내·성남·성서동 사무소는 이미 신축이전 하였으나 주소지에 관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97. 5. 8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입법예고를 마친바 주민의견 없으므로 개정하는데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 한시정원이 충북도에서 '97. 3. 27 승인 통보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 현정원 결원발생시 충원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나 지방 고등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인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정원으로 관리 하였다가 본청과장 결원시에 적재적소에 보직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며
- 한시기간 동안 예산이 가중되고 또한 승진 후보직원들의 승진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 사기 저하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고시 합격자 영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97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잉여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부서에 부족 인력으로 보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 충주시시기조례안

{ 질 의 }

- 모형중 "녹색"의 정형화 된 문양과 비교하여 "청색"모양을 부드럽게한 이유는?

▣ 답 변

- 모양이 너무 매끄럽고 정형화된 문양보다는 21세기를 대비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 부드러운 모양으로 하여 움직이는 역동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 "녹색"은 자연과 과거를 상징하고 "청색"은 맑은 물과 미래의 무한한 발전,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임.

{ 질 의 }

- "충주시"라는 글씨체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듬 시류에 따라 부드러운 글씨체로 하는 방안은?

▣ 답 변

- 고딕체를 약간 부드럽게 변형한 것임.

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질 의 }

- 안 제3조 당연직위원 대상은 구상하고 있나?

▣ 답 변

-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및 관외 인사중 전대교수, 상공회의소, 기업인,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과장, 중소기업중앙회이사 등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질 의)

- 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 조례가 많으며, 유명유실한 조례가 있다고 보며 이와 유사한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은?

□ 답 변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서 이를 소관할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 경제에 관한 전문가등 각계 각종 의견수렴 기능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조례안이므로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질 의)

- 안 제3조 여론을 수렴하는데 굳이 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 답 변

- 위원회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 받기 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하여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봄.

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질 의)

- 안 제10조 수상자의 결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규정은 권위주의적이며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 답 변

-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규정은 상징적이며 결정자를 공포한다는 뜻이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바뀔 염려는 없음.

{ 질 의 }

- 수상자의 결정시 투표방법을 1차에 결정이 안될시 임의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 ~ 3차 계속해서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답변

- 참고 하겠음.

라.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없 음"

마. 충주시자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질 의 }

- '95. 1. 1일 시·군통합 2년 6개월이 경과된 현재 본청 직원은 증원되는 반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감원되어 불평이 많음.
당초('95. 1. 1현재)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정원 현황을 제출바람.

☞ 답변

- 새로운 요인 발생시 (기구증설등) 자체조정한 것이며 시는 자체인력 조정이므로 증원된 것이 아님

{ 질 의 }

- 수질환경사업소 토목 7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등 수질환경사업소의 관로 및 시설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또한 기능 8급 토목직 1명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수 없음.

▣ 답변

○ '97업무진단 및 업무량과 중요도에 따라 적정배치 하겠음.

(질의)

○ 신청사로 이전시 행정자료실의 사서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임. 사서직 배치방안은?

▣ 답변

○ 검토하여 사서직 증원을 도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상정 하겠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시기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 1)
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 2)
라.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시기조례안
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별표 1】

■ 조례명 :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시장이 위촉할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당해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여 당해 안전의 심의 및 처리가 종료되면 자동해촉 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주재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위원회 해촉)"을 "(위원회 해촉)"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원안	수정안
<p>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경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 외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 외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해 안건의 심의 및 처리가 종료 되며 자동해촉 된다.</p>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정이 된다.</p> <p>제9조 (위원회 해촉) (생략)</p>

[별 표 2]

■ 조례명 :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호 중 “부위원장은 충주시교육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주재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중 “위원회의 심사후 시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시장이 수상자를 공포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u>부위원장은 충주시교육장이 된다.</u>	제5조 (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1. <u>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	제5조 (위원회 구성) 1. <u>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현행과 같음)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본과 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u>위원회의 심사후 시장이 결정한다.</u>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u>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시장이 수상자를 공포한다.</u>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시기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를 상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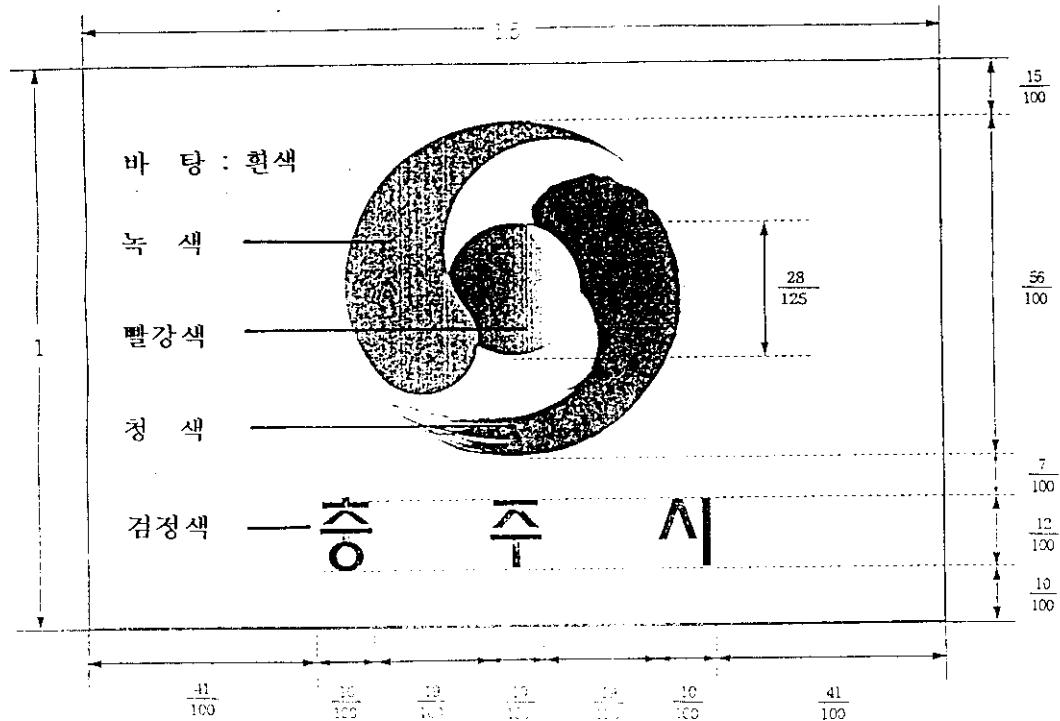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기의 규격과 비례



※ 가로(길이) : 세로(너비) = 3 : 2

- 계양용 : 본 청 - 가로 2100 mm × 세로 1400 mm
 읍.면.동 - 가로 1350 mm × 세로 900 mm

※ 국기와 함께 계양 할 경우 계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조정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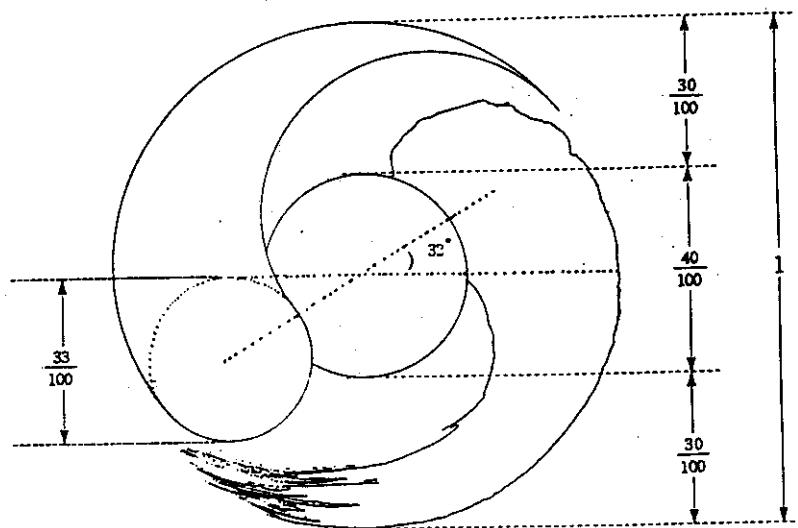
- 바치용 : 가로 1350mm × 세로 900mm

- 가로기 : 가로 1450mm × 세로 800mm

※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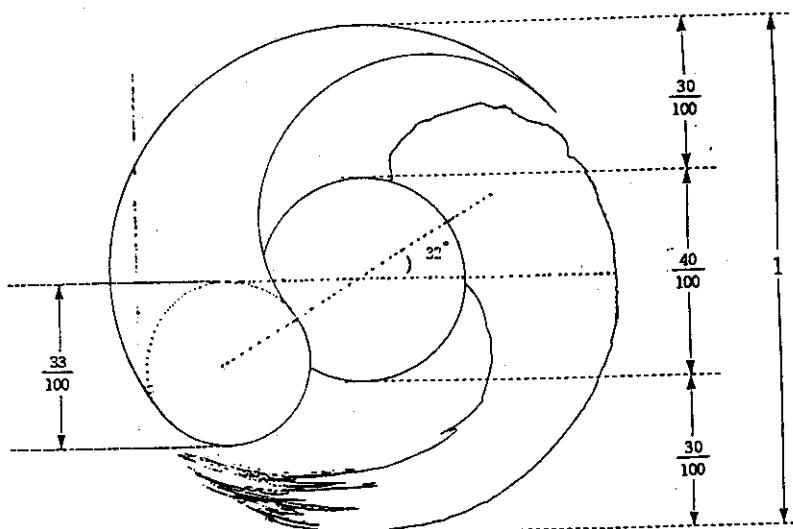
문장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3)

회장



※ 필요와 용도에 따라 규격을 적의조절 제작 사용 할 수 있다

(별지서식)

회장증여대장

연번	증여일자	국적	성명	주소	증여사유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의 창출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제안과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제안
2.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3.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4.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5. 국제통상 협력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방안
6.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
7. 자치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영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해촉)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0조(회의결과 조치) ① 위원회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사항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차기회의 개최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 회기에 부의 되었던 사안은 차기 회의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 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 호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문화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충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주시내에 당해년도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문화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3조(수상부문)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산업경제근로부문
6. 사회봉사윤리부문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충주시교육장이 된다.
2. 위원은 각 수상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문화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담당관이,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제9조(추천 및 심사등) ①위원회는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각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분과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위원회의 심사후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시상) ①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의 정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충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주시 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부표 중 사무소명, 위치란 중 충주시 청, 살미면, 금가면 및 성내 · 성남 · 성서동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사 무 소 명	위 치
본 청	충 주 시 청	충주시 금능동 700
면	살 미 면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35-2
	금 가 면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08-4
동	성내 · 성남 · 성서동	충주시 성내동 45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증 "565"명을 "569"명으로, 같은조 제3호증 "177"명을 "176"명으로, 같은조 제4호증 "147"명을 "145"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제2조제1호증 증원되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는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결원이 최초 발생 하는날에 해당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